

민원서류

접수번호: 31635

접수일시: 2022.05.25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28.>

처리기한: 22.5.2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처리과 기록(1031)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개인(이 동 균)				사업자등록번호				691011-1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덕평로1길 69-38 (전화번호:010-9345-072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건물명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건축물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연면적(㎡)				883.84㎡				작업기간				2022.05.16. ~ 2022.05.18.(3일간)			
	석면건축자재[길이(m)·면적(㎡)·부피(㎡)]												1,056.76㎡			
측정 기관	대표자				(주)우솔환경기술연구원(권용태)				사업자등록번호				516-88-10249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9, 4층			
	측정자/분석자												예진부 / 하원호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수량)	유량 (ℓ/분)	측정 일시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별첨 1.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별첨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2년 05월 일

제출인(대표자)

개인(이 동 균)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건축물 부분철거공사

(주)우솔환경기술연구원은
최고의 인력과 다부진 노하우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최고품질의 데이터를 드립니다.



ws5482@hanmail.net



대구시 북구 호국로 229, 4층



053-954-5482

목차

PART. CONTENTS.

I.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별첨 1. 측정결과

2. 측정지점

II. 관련법규

III. 관련 인증서















첨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별첨1. 측정결과

시료 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수량)	유량(ℓ/min)	측정 일시 (측정 시간)	측정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05월 16일						
#1	부지경계1	YSP-1045S / 1	10.05	240분	0.002	기준치 미만
#2	부지경계2	YSP-1045S / 1	10.06	240분	0.002	기준치 미만
#3	부지경계3	YSP-1045S / 1	10.04	240분	0.001	기준치 미만
#4	부지경계4	YSP-1045S / 1	10.03	240분	0.001	기준치 미만
#5	위생설비입구	YSP-1045S / 1	10.04	40분	0.001	기준치 미만
#6	폐기물반출구	YSP-1045S / 1	10.04	40분	0.002	기준치 미만
#7	폐기물상차1	YSP-1045S / 1	10.03	40분	0.001	기준치 미만
#8	폐기물상차2	YSP-1045S / 1	10.02	40분	0.001	기준치 미만
05월 17일						
#1	부지경계1	YSP-1045S / 1	10.03	240분	0.001	기준치 미만
#2	부지경계2	YSP-1045S / 1	10.03	240분	0.001	기준치 미만
#3	부지경계3	YSP-1045S / 1	10.04	240분	0.002	기준치 미만
#4	부지경계4	YSP-1045S / 1	10.05	240분	0.001	기준치 미만
#5	위생설비입구	YSP-1045S / 1	10.03	40분	0.002	기준치 미만
#6	폐기물반출구	YSP-1045S / 1	10.06	40분	0.001	기준치 미만
05월 18일						
#1	폐기물상차1	YSP-1045S / 1	10.04	40분	0.001	기준치 미만
#2	폐기물상차2	YSP-1045S / 1	10.06	40분	0.001	기준치 미만













별첨2-1. 측정지점(2022.05.16. 측정)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1 부지경계1			
	시작 시간: 10시 03분	종료 시간: 14시 03분	
#2 부지경계2			
	시작 시간: 10시 04분	종료 시간: 14시 04분	
#3 부지경계3			
	시작 시간: 10시 05분	종료 시간: 14시 05분	
#4 부지경계4			
	시작 시간: 10시 06분	종료 시간: 14시 06분	
#5 위생설비입구			
	시작 시간: 10시 09분	종료 시간: 10시 49분	
#6 폐기물반출구			
	시작 시간: 13시 18분	종료 시간: 13시 58분	
#7 폐기물 상차1			
	시작 시간: 15시 03분	종료 시간: 15시 43분	

별첨2-2. 측정지점(2022.05.16. 측정)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8	폐기물 상자2	 <p>시작 시간: 15시 03분</p>	 <p>종료 시간: 15시 43분</p>	

별첨2-3. 측정지점(2022.05.17. 측정)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1	부지경계1			
		시작 시간: 10시 10분	종료 시간: 14시 10분	
#2	부지경계2			
		시작 시간: 10시 11분	종료 시간: 14시 11분	
#3	부지경계3			
		시작 시간: 10시 12분	종료 시간: 14시 12분	
#4	부지경계4			
		시작 시간: 10시 13분	종료 시간: 14시 13분	
#5	위생설비입구			
		시작 시간: 10시 14분	종료 시간: 10시 54분	
#6	폐기물반출구			
		시작 시간: 13시 04분	종료 시간: 13시 44분	

별첨2-4. 측정지점(2022.05.18. 측정)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1	폐기물 상차1			
		시작 시간: 14시 24분	종료 시간: 15시 04분	
#2	폐기물 상차2			
		시작 시간: 14시 24분	종료 시간: 15시 04분	

II. 관련법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 비산정도 시료채취 방법

제3조(시료채취 시기)

- ① 석면 해체·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②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정도측정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시기 및 지점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 ①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체질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1과 같다.
- ③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체질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8. "거주자 주거지역"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9.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2과 같다.

[별표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 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별표2]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 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Ⅲ. 관련 인증서

1.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제2019-120008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최초)

기관명	주식회사우솔환경기술연구원	
소재지	(41475) 대구 북구 호국로 229 (서변동) 4층	
대표자성명	권용태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 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대구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9. 8.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1.3.3>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호	처리기간	7 일
[] 건축물	위치(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건축물등록번호 4888038022-1-10800000	
	용도 : 동물관련시설		건물명(설비명) : 양항리 건물	
[] 설비	건축물수 2		구 조 : 경량철골조	
	세대수		연면적 883.84M ²	
소유자	성명 : 이동균		전화번호 (없음)	
	주소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로1길 69-38			
석면해체 ·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주)청솔디에코		대표자 성명 석 영 민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 4534호			
	전화번호 054-373-9930 팩스 054-373-9931		휴대전화번호 010-9345-0723	
작업장	공사명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건축물 부분철거공사		전화번호 010-9345-0723	
해체 사유	해체사유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124-18 건축물 부분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해체기간	2022년 04월 23일 부터 2022년 05월 06일 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 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m ²) · 부피(m ³) · 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1,056.76M ²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 강 현 숙		전화번호 : 010-9345-0723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별	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 년 04 월 일

신고인

(주)청솔디에코

석 영 민



진주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